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9. 1.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일부개정(시행 2023. 6. 28.)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나이에서 ‘만’ 용어 삭제
 -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(만 나이 통일법)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‘만’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민법」 제158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792(2023. 7. 25.)]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17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7. 10. ~ 2023. 7. 31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만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고성군민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임신·출산·만18세”를 “임신·출산·18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”를 “3개월 이상 12세 이하”로 한다.

제9조(「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1세”를 “11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고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1조(「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46세 이상 만 65세”를 “46세 이상 65세”로 한다.

제12조(「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3조(「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4조(「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람료 및 시설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1. 관람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관람료			비 고
	어린이	청소년, 군 인	어 른	
개 인	1,500	2,000	3,000	-
단 체 (30명이상)	1,000	1,500	2,500	-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
고성군민	500	500	1,000	-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-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

※ 어린이: 만 3세 ~ 만 12세

※ 청소년: 만 13세 ~ 만 18세

2. 주차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주차료		비 고
	일 반	경차, 저공해차량, 장애인 탑승차량	
소 형	2,000	1,000	
대 형	3,000	1,500	소형 외 모든차종

※ 소형: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미만의 화물차

※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.

※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3. 로프어드벤처

(단위 : 원)

구 분	요금		비 고
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
오니 코스	3,000	2,000	※ 사용연령: 만 7세 ~ 만 12세
고니 코스	2,000	1,500	※ 사용연령: 만 3세 ~ 만 6세

관람료 및 시설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1. 관람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관람료			비 고
	어린이	청소년, 군 인	어 른	
개 인	1,500	2,000	3,000	
단 체 (30명이상)	1,000	1,500	2,500	-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
고성군민	500	500	1,000	-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-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

※ 어린이: 3세 ~ 12세

※ 청소년: 13세 ~ 18세

2. 주차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주차료		비 고
	일 반	경차, 저공해차량, 장애인 탑승차량	
소 형	2,000	1,000	
대 형	3,000	1,500	소형 외 모든차종

※ 소형: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미만의 화물차

※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.

※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3. 로프어드벤처

(단위 : 원)

구 분	요금		비 고
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
오니 코스	3,000	2,000	※ 사용연령: 7세 ~ 12세
고니 코스	2,000	1,500	※ 사용연령: 3세 ~ 6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만18세</u>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제2조(「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다자녀세대”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<u>만18세</u>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.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 <u>18세</u> ----- -----.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
제3조(「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아동 및 청소년”이란 <u>만 19세</u>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 2. ~ 7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 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 -----. 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「고성군민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상자 자격) ① (생략) ②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수상자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<u>만 18세</u>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「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기상황 인정기준) 군수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6. (생략) 7. 주소득자의 <u>임신·출산·만18세</u>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. ~ 12. (생략)	제3조(위기상황 인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임신·출산·18세</u> ----- ----- ----- 8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)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략) 3. “자녀”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만 18세</u>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.

제8조(「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병원이용아동“이란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<u>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</u> 아동 중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 2. ~ 4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3개월 이상</u> <u>12세 이하</u> ----- -----. 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「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어린이”란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내 거주하는 만 <u>11세</u>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·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. 2.·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11</u> <u>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「고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5. “노인체육”이란 만 <u>65세</u>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,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. 6. ~ 11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6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「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중장년층”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46세 이상 만 65세</u>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46세 이상 65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제12조(「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령 영세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<u>만 65세</u> 이상이면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13조(「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 1. ~ 6. (생략) 7.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65세</u> 이상의 진료 대상자 8. ~ 10. (생략)	제4조(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8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「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람료의 감면) 1.·2. (생략) 3.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<u>만 65세</u> 이상 경로자 4. ~ 19. (생략)	제10조(관람료의 감면)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4. ~ 19. (현행과 같음)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**

□ 민법

개정 전[시행 2022. 12. 13.]	개정 후[시행 2023. 6. 28.]
제158조(연령의 기산점)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	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<u>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</u>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2. 12. 27.]

□ 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27.]